

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법 제15조 내지 제18조에 의한”을 “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”으로, “제18조”를 “법 제18조”로 한다.

제3조 제2항 후단 중 “위반금액을 정함에 있어 법 제18조 위반행위는 계약금액을, 법 제15조 및 제16조 위반행위는 지급·수령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”을 “위반금액이란 법 제15조부터 법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준수,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지급·수령하거나 이동시킨 자금 등의 크기를 말한다.”로, 단서 중 “계약금액을 위반금액으로 한다”를 “위반금액을 산정한다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법 제15조 내지 제18조”를 “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”로, “경우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”를 “경우에는 시행령 [별표 3의2]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단서의 경고 처분을 할 때에 감독원장은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이 없거나 의견진술에 상당한 이유 또는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심사·조정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별지 제1호 서식 제3호 후문 중 “향후 2년 이내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”를 “향후 5

년 이내에 재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가 정지·제한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,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”로 한다.

별지 제5호 서식 제4호 중 “100분의 5”를 “100분의 3”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 서식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향후 5년 이내에 재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가 정지·제한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, 또한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행정처분 및 과태료 세부운용기준) (생략)</p> <p>① 경고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법 제15조 내지 제18조에 의한 절차준수, 허가, 신고수리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거래(다만 제18조 위반의 경우에는 2만달러 이하의 거래)</u></p> <p>② 과태료 : 시행령 [별표 4]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위반금액을 정함에 있어 <u>법 제18조 위반행위는 계약금액을, 법 제15조 및 제16조 위반행위는 지급·수령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</u> 다만, 법 제18조 위반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고 <u>계약금액을 위반금액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<u>법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의 의무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</u></p>	<p>제3조(행정처분 및 과태료 세부운용기준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① 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 제18조</u>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위반금액이란 법 제15조부터 법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준수,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지급·수령하거나 이동시킨 자금 등의 크기를 말한다.</u> ----- ----- ----- <u>위반금액을 산정한다.</u></p> <p>③ <u>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</u>----- ----- ----- <u>경우에는 시행령 [별표 3의2]에 따</u></p>

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
환거래 또는 행위 정지, 제한 및
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제재심의절차 등) ① ~ ④
(생략)

<신설>

라 -----

-----.

제8조(제재심의절차 등) ① ~ ④
(현행과 같음)

⑤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
단서의 경고 처분을 할 때에 감
독원장은 제재대상자의 의견진
술이 없거나 의견진술에 상당한
이유 또는 새로운 사정이 발견
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검사및
제재에 관한규정 제33조제1항에
따른 심사·조정 및 심의를 생략
할 수 있다.